

의안번호	제 151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5월 일 (제 300 회)

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5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5월 2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)을 적용하여 각종위원회 수당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각종위원회 수당지급대상 규정(제3조)
 - 도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
 - 도 의원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 의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수당)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,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전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수당) ① 각종 위원회(사이버 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전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수당)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,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전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)

가. 위원회 참석수당

-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 - 교통비, 식비,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
-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-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